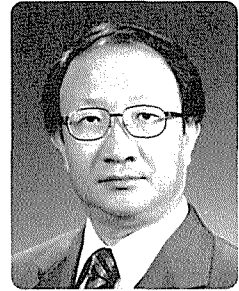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과 한국의 석유산업



김 종 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필요한 에너지의 97%이상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수급안정성 제고는 항상 에너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석유수입은 세계 4위이고 석유소비는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석유 시장의 여건 변화와 원유가격의 변동은 우리나라 경제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관심을 집중시키게 된다. 비록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꾸준한 증가로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석유의 비중은 1995년의 63.3%에서 2000년에는 54.4%로 감소하였으나 아직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그간 추진되어 오던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이 성사됨으로서 에너지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에 대한 영향을 예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01년 5월 에너지각료회의에서 한국을 26번째로 IEA가입을 공식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3월 28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정식으로 회원국이 되었다. IEA는 1차 오일 쇼크 이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4년에 설립된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모임으로 세계석유시장 안정과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IEA는 설립이후 석유위기관리 및 예방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제 에너지외교의 중심적 무대가 되어 왔으며 OECD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멕시코를 제외한 2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있다.

IEA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안보 및 환경보호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문제는 비상 사태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외교 또는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상호의존도 증대 및 국제화 증가 추세에 따라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보다는 지역주의 또는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IEA는 평상시 다자간 협력 증진을 통해 비상 대응체계 운용을 보장하고 오일 쇼크에 대한 안보장치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IEA는 1993년 각료급 이사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Shared Goals”에서 에너지소비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석유 의존도의 감축, 석유생산국 및 비회원 석유 소비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에너지 시장의 안정, 국제석유시장 및 석유회사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 그리고 석유공급 교란요인에 대한 대책강구 및 비상시 석유유통에 대한 대책수립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EA 가입으로 에너지부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90일분의 석유비축 유지, 비축유 운용 제한, 에너지정보제공이 그것이고, 정부는 분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지게된다. 이러한 회원국으로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안보강화, 세계에너지시장에서의 위상 및 영향력제고, 에너지정책의 탄력성 및 합리성제고 등으로 상당한 잠재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행하여야 할 가입조건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 설명될 수 있다.

첫째, 90일분 석유 비축의무이다.

이 조건은 국제에너지계획(IEP) 협정 제 1장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회원 가입 희망국은 일차적으로 자국 순수입량의 90일분에 해당하는 석유를 의무적으로 비축하여야 한다.

둘째, 비상시 석유수요억제 및 할당의무이다.

국제에너지계획(IEP) 협정 제 2장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시 수요억제 계획 수립 의무화와 제 3

장, 제 4장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시 회원국간 석유유통에 근거한 것으로 회원국은 비상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요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IEA의 결정에 따라 회원국간 석유유통을 위해 비축분의 일부를 방출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IEP는 석유공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3개의 시나리오별로 비상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에너지정보 제공 및 보고의무이다.

제 5장은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회원국은 자국의 석유관련 정보를 IEA에 제공하고 연간 통계자료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구축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게도 협력차원에서 자료제공을 의뢰하고 있다. IEA가 요구하는 정보는 회원국의 석유산업정보, 원유도입 및 비축량 관련정보, 에너지가격정보, 에너지수급통계정보 등이다.

넷째, 분담금 납부 의무이다.

모든 회원국은 과거 3년간의 GNP를 기준으로 환율변동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되는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분담금 비율은 OECD 회원국 분담금비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분담금 비율이 약 2%이므로 매년 약 4~5억원 가량의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로 2000년도의 분담금 비율을 보면 미국이 25%로 가장 높고 일본이 22.3%, 독일이 10.9%, 프랑스가 6.8%의 순으로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의 혜택과 대응책을 살펴보면, 회원국의 의무조항인 IEP에 근거한 비상대책에 부합하는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에너지위기 발생시 위기극복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특히 IEA의 90일 석유비축을 위해 우리정부는 물론 민간 석유회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



며 IEA의 석유비축 운용방안의 철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비상사태의 정확한 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은 우리나라의 위기극복은 물론 IEA와의 협력증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적정 비축물량과 민간 비축물량의 설정, 비축설비 확충계획 그리고 비상시의 비축물량 운용계획 등이 미리 마련되어야함은 물론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상시에 만반의 준비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IEA의 에너지 통계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에너지통계 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석유산업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석유관련 정확한 해외정보를 입수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IEA에 한국석유공사의 협조로 월간 및 연간 석유수급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통계체계의 상이와 양적 부족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석유산업 관련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해당 정부 부서와 석유산업계의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간의 역할 분담이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향후 10년에 걸쳐 석유수요가 연평균 약 3.5%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의 추세보다는 빠르지 않지만 대부분의 IEA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석유의 안정적 공급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정책 목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생산국과의 적정물량 확보와 현물시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물론 자체 유전개발 및 생산 노력도 함께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석유공급선의 다변화를 위해 중동지역의 편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석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생산이다. 기후변화 협약에서의 Greenhouse Gas의 감축과 천연가스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석유산업의 경쟁력확보와 석유회사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IEA의 환경에 적합한 에너지의 개발, 공급 및 사용에 관한 연구 및 협력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교류를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기술정보교환(ETDE), 온실가스 기술정보교환(GREENTIE), 에너지기술시스템 분석프로그램,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중요한 R&D 협력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은 주로 국가연구기관을 통해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기업의 참여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